

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20○○. ○. ○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매매대금 ○○○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○○만원을 계약당일 지급 받고, 중도금 ○○만원은 같은 해 ○. ○○.에 지급 받았으며, 잔금 ○○만원은 같은 해 ○○. ○○. 지급 받고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모두를 교부하였습니다.
- 2.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

신청에 필요한 서류 모두를 교부받은 뒤 1년이 다 지나가도록 별지목록 함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가지 않음으로 인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이한 각종 세금이 원고에게 부과될 뿐만 아니라, 원고의 국민건강보험료산정에 있어서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소유재산으로 고려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계속 미루기만 하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해가지 않고 있습니다.

- 3. 그런데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매매부동산에 관하 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통상 의 채권채무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 한 방법으로 채권채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,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명의로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상, 공법상 불이익(각종 조세의 부담 등) 내지 사법상 불이익(민법 제758조에 의한 소유자책임 등)을 입을 우 려가 있는 점. ②채권채무관계는 권리·의무의 엄격한 대립관계가 아니고 사회 생활상의 공동목적달성을 위한 유기적 관계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점, ③등기제 도는 단순한 사법(私法)관계의 보조적 기능을 넘어 진정한 등기부의 유지라는 공익과 관련된 공적 제도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, 따라서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지 않는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등기의 당사자 일방은 타방 당 사자에 대하여 등기가 진실에 합치하도록 함을 내용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을 갖 는 동시에 타방 당사자는 그 등기청구에 응하여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점, ④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"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 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."라고 규정하여 등기인수청구를 인용하는 판 결에 의한 등기의무자의 단독등기신청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등기 의무자도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등기인수청구권 내지 등기수취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.
- 4.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등기인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○○. ○. ○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구하지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- 1. 갑 제1호증의 1, 2
- 1. 갑 제2호증

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

부동산매매계약서



첨 부 서 류

1.	위 입증방법	각	1통
1.	토지대장등본		1통
1.	건축물대장등본		1통
1.	소장부본		1통
1.	송달료납부서		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

부동산의 표시

- 1.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-ㅇㅇ 대 157.4㎡
- 1.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2층 주택
 1층 74.82m²
 2층 74.82m²
 지층 97.89m². 끝.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	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3)참조		
0	·송달료 : ㅇㅇㅇ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		
및 기 간	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기 타	•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(제28조), 제29조에서 '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'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위 법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, 통상의 채권채무관계에서는 채권자기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병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,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임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60708 판결).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등기·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4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소멸시효

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(대법원 1991. 3. 22. 선고 90다9797 판결),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(대법원 1976.11.6. 선고 76다148 판결; 1980.1.15. 선고 79다1799 판결; 1988.9.13. 선고 86다카2908 판결: 1999. 3. 18.

선고 98다32175 판결 참조).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를 사용·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을 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·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.(대법원 1999. 3.18.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).

※ (3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